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 2. 8.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기열 의원 등 5명(원종진, 박종길, 박정환, 조복희)
- 발의일자: 2022. 1. 25.
- 회부일자: 2022. 1. 27.
- 검토기간: 2022. 1. 28. ~ 2. 3.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고,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및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 25. ~ 2022. 2. 4.)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직무 제한 규정을 삭제 함에 따라 ‘직무’ 정의 조문을 삭제하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해 「공무원 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따로 제정 되었기에 이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미비점을 정비하였음.
-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안정된 직무 활동 보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의 시행일(2022. 1. 13.) 이후 개정됨에 따라, 직무 범위를 상위법 시행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부칙 제2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2조 “직무”에 대한 정의가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에서 “직무로 인하여”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를 삭제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 「지방자치법」 부칙 제16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의 시행일(2022. 1. 13.) 이후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사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제2조(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u>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 이후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일(2022. 1. 13.) 이후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 신설 필요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 · 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 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생략)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직무(「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 지방자치법 ·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의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
2. 상해: 제1호의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할 경우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직무로 인한 사망 · 장애 ·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원 1명

2. 구 의회협력업무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 · 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 금액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의회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청구 및 기한)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유족 또는 해당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대리인

②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1. 사망: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2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제11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 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